



(船舶平衡水)

[2019. 12. 10.] [377 , 2019. 12. 10.,]
() 044 - 200 - 5835, 5834

1 () 「 (船舶平衡水) 」

2 () . < 2014. 10. 28., 2019. 7. 1.>

1. " " 「 (船舶平衡水) 」 (" ") 12 2
(" ") [13 (" ") 3

2. " " 8 1 .
(" ") 가 (" ") 가

3. " " 가 ,

4. " " 가 13

5. " " 가 13

6. " " , ,

7. " " ()
(lab - scale) 가

8. " " ()
가

9. " " 가

10. " " .

2 2() 2 12 " "

- 1. 15
- 2.
- 3. 10
- 4. 8 (" ")

[2019. 7. 1.]

3 () 3 3 3 가 " [(bowsprits), (boom), (bumpkins) (船體)]가 50 .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8 .>

1.>

3 3 3 " " .< 2014. 10. 28.>

- 1.
- 2.

4 () 3 (" ") 「 (船舶平衡水) 」 (" ") 2 2 가 6 2 2 " " 1 .< 2013. 3. 24.>

5 (•) 3 3 4 2 3 6 8 2 .< 2013. 3. 24.>

6 () 3 3 5 " " .< 2013. 3. 24.>

- 1.
- 2.
- 3.

7 <2014. 10. 28.>

8 <2014. 10. 28.>

9 <2014. 10. 28.>

10 () 5 24 ()

) 4 .< 2019. 7. 1.>

1 5 .< 2019. 7. 1.>

1. :
2. 24 :
3. 가 24 :

11 () 6 1 " " .< 2013. 3. 24., 2019. 7. 1.>

1. 「 가 200 」 가 200 (" ")

가 가 50 200

2.

12 () 6 1 " " 4
 < 2013. 3. 24., 2019. 7. 1.>

12 2() 6 1 " " 15
 5
 [2019. 7. 1.]

13 () 6 2 " " .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가
 .): 가
 가. (가 , 가
 2)가 50 : 1 10
 . 가 10 50 : 1
 10

2. :
 가. (O1, O139): 100 (cfu) 1
 1 () (cfu) 1
 . : 100 250
 . : 100 100

13 2() 6 5 " " " 26

[2019. 7. 1.]

14 () 7 1 (가 . < 2013. 3. 24.>

1. 7 1 (" ")
 2. 가 가 가
 1 가가 7 2 가
 가 가 ,
 . < 2013. 3. 24.>

6 (IMO) . < 2013. 3. 24.>

2 3 가

. < 2013. 3. 24.>

1.

2.

3.

4. 가

5.

6. .

4 .< 2013. 3. 24.> 7 3

1 5 .< 2013. 3. 24.>

15 () 8 5 .< 2019. 7. 1.>

16 () 8 2 6 .

16 2() 8 2 1 . 가 (" ") 3 4 2

1 .

1.

2.

3.

4. 8 2 1 2 (" ")

5. 가

6.

1 .

6 2 2 .

[2014. 10. 28.]

16 3() 16 2 3

4 3

30 1 「 」 60 2 「 」

(" ")

2 , 16 4, 21 24 , 27 33] .

< 2019. 7. 1.>

1

가

, 8 2 2 4 4

2 .

5 .

[2014. 10. 28.]

16 4() 가

1

1.

2. 가 가

[2014. 10. 28.]

17 () 9 1

5

2

. < 2019. 7. 1.>

1

7

. < 2019. 7. 1.>

5

2

. < 2019. 7. 1.>

2

18 () 9 3 (「

」 2 3)

5 1

. < 2014. 10. 28., 2019. 7. 1.>

1. 「2004

」 (" ")

2.

3.

4.

36 2 1

1

< 2014. 10. 28.>

19 () 9 5

. < 2019. 7. 1.>

1.

2.

3.

4.

5.

6.

7.

, 가 가

. < 2013. 3. 24., 2019. 7.

1.>

1.

2.

3.

4.

5.

20 () 10 1

1.

가. ,

.

.

2.

가.

.

.

.

3.

가.

.

.

.

4.

가.

.

.

.

.

.

5.

가.

.

, ,

.

6. 가

10 2

3

6

(

2

(

)

,

.<

[2014. 10. 28.>](#)

21 () 11 1

7

()

< 2013. 3. 24., 2014. 10. 28.>

- 1.
- 2.
- 3.
- 4.
- 5.
- 6.
- 7.

11 1 " " 11 1

.< 2014. 10. 28.>

1
8

11 2

.< 2013. 3. 24., 2014. 10. 28.>

22 () 12 1

8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21 1 (21 1)

2. 17 8
12 1

()

8

.< 2013. 3. 24.>

1.

2. 1 1 2 (가)

12 2

9

.< 2013. 3. 24.>

23 () 13 1

8

.< 2013. 3. 24.>

1.

2. 22 1 1 2 (가)

13 2

1. 1 : 3

2. 2 : 3 (1)

2 가

3

13 2

1. 1 : ,

2. 2 :

13 3

(裏

書欄) .< 2013. 3. 24.>

- 가 1 2 1
- 2 2 , 2 1
- 24 () 14 1 8
 . < [2013. 3. 24.](#)>
1.
 2. , 22 1
 14 1 " "
- . < [2014. 10. 28.](#)>
1.
 2. 가
- 1 , 가
 . < [2013. 3. 24.](#), [2014. 10. 28.](#)>
- 3 , 1 2
 . < [2014. 10. 28.](#)>
- 25 () 12 14 9
- 26 () 15 1 5
- 27 () 15 2
 , 1
- < [2013. 3. 24.](#)>
1. : 3
 2.
 : 5
 3. (가 1,000) : 1
 1 10
- . < [2013. 3. 24.](#)>
1. 1 1 :
 2. 1 2 :
 3. 1 3 :
 1 . <
- [2013. 3. 24.](#)>
- 28 () 15 4
 . < [2013. 3. 24.](#)>
1. :

2. 3 가
- :
3. 3 가 :
4. 가 : 가 ,
- 3 가
- 가. (繫船)(「 2 1 1)
- .
- 1) 1
- 2) 1
5. 15 2 :
- 29 () 17 2 (
- " ") . < [2014. 10. 28.](#)>
- 1.
- 2.
- 3.
- 4.
5. <[2014. 10. 28.](#)>
- 1 ,
- . < [2013. 3. 24.](#)>
- 1.
- 2.
- 3.
- 4.
- [[2014. 10. 28.](#)]
- 29 2() 17 3 " "
- . < [2019. 7. 1.](#)>
- 1.
- 2.
- 3.
- 가.
- .
- [[2014. 10. 28.](#)]
- 30 () 17 5 " " 11
- .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 30 2 <[2019. 7. 1.](#)>
- 31 () 17 2 3 12
- 10 (17 4
- 17 6

) 19 1 (" "

) . < 2014. 10. 28., 2019. 7. 1.>

1

.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 29 1 1

4

2. 17 6 : 29 1 1 4

3. : 29 1 1 4

17 3

가 13

2 (" ") ,

10 , . <

2013. 3. 24., 2014. 10. 28.>

31 2(•) 17 4 •

13 2 •

20 2 1 (" ") .

1. 10 1

2. 가

3. 2

1 가 가 가 ,

가

1 2

3 17 4

1

[2019. 7. 1.]

32 () 17 5 14

. < 2013. 3. 24., 2019. 7. 1.>

1

30 .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31 3 10 ,

2. 20 1 ()

3. 20 4

(

)

4. 31 2 4

(

가

)

17 6

15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3

2 2 3

30

.< 2013. 3. 24., 2014. 10. 28.>

1. 2 1 3

2. 3

33 () 17 7

16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2.

3.

4.

5.

6.

1

17

11

.< 2013. 3. 24.>

33 2() 17 2 2

90

30

17 2

1.

2. 10 1 (가)

1

[2014. 10. 28.]

33 3() 17 4 2

17 3

1.

2.

1

「

」

36

1

2

1.

(

)

2.

가

(

)

1

2

[[2019. 7. 1.](#)]

34 (

)

18

12

1

.<

[2013. 3. 24.>](#)

35 (

)

19

1

13

1.

2.

3.

4.

36 (

)

19

2

18

2

6

.<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2.

3.

4.

5.

6.

(

)

가.

1

가 35

19

.< [2013. 3. 24.](#)>

1

2

.< [2013. 3. 24.](#)>

1.

2.

3.
4.
5.

19 2 2
18

.< 2019. 7. 1.>

4 35

19

3

.< 2019. 7. 1.>

2
2019. 7. 1.>

14 .<

19 3

.< 2013. 3. 24., 2019. 7. 1.>

1.
2.
3.
4.

37 (.)

19 5

.< 2013. 3. 24.>

37 2() 20 1

1. :
2. :

20 1

2

14

3

가

45

14 2

4

[2014. 10. 28.]

37 3() 20 4

.< 2019. 12. 10.>

1.

가.

37 2 1 1

(

)

2.

1

[2014. 10. 28.]

37 4(

)

19 2

(

)

(

)

. < 2019. 7. 1.>

1.

2. 2 2

3.

(

)

1

가

「

」

36 1

1

가

2 2

, 19 3

19 2

(

)

(

)

1.

2.

3

4

1.

2.

3.

4.

[2014. 10. 28.]

37 5(

)

20 2 2

14 3

1

1.

2.

3.

4.

[2014. 10. 28.]

37 6(

)

20 2 1

[2014. 10. 28.]

37 7() 20 4 20
1 14 4

- 1. 17
- 2. 17 3
- 3. 20
- 4.

3

[2019. 7. 1.]

38 () 21 1 () 20 ()

.< 2019. 7. 1.>

- 1. ()
- 2.
- 3. .
- 4. .

1 「 」 36 1

.< 2019. 7. 1.>

1

.< 2019. 7. 1.>

21

.< 2019. 7. 1.>

21 3 " " .< 2013. 3.

24.>

- 1.
- 2.
- 3.
- 4. .

21 3 가 5

가 30 22

.< 2019. 7. 1.>

6 3

.< 2019. 7. 1.>

39 () 23 1

- 1. 13
- 2. , ,

40 () 23 1 23
2 1 24

1 15 7 15 .< 2019. 7.

1.>

1

3

41 () 23 2
23 2
3

25

41 2() 23 4

5 1

. < 2019. 7. 1.>

- 1.
- 2.
- 3.
- 4.
- 5.
- 6.

(, .)

(, ,)

23 4 36 2 1 ("

[2014. 10. 28.]

42 (.) 25 1 2
26 .

. < 2019. 7. 1.>

1. ,
- 2.
3. 가 ()

1 「 」 36 1

(

) . < 2019. 7. 1.>

43 () 26 2

15

1

.<

2019. 7. 1.>

44 () 28 2 " "
. < 2013. 3. 24.>

- 1.
- 2.
- 3.

28 3 4

「 」

79 .< 2019. 7. 1.>

45 () 28 2 3

- 1.
- 2.
- 3.

1

.< 2013. 3. 24.>

46 () 28 6

.< 2019. 7. 1.>

1

2 (" ") 가

가

.< 2019. 7. 1.>

2

.< 2019. 7. 1.>

47 () 29

() 3

.< 2013. 3. 24., 2019. 7. 1.>

1. 「 」 (" ")

1 2.

2. 「 」 32

3. 「 」 「 」 32

1

1. ()

2. (「 」 3 1 1)

3. (IMO Number)

4. (,)

5. , ,

48 () 4 1

27

.< 2013. 3. 24., 2019. 7. 1.>

- 1.
- 2.
- 3.
- 4.
- 5.
- 6.
- 7.
8. 4 2

49 () 30 2 90 27 48
 . < 2013. 3. 24., 2019. 7. 1.>

50 (•) 33 2 " " 가 가 . < 2013. 3. 24.>

51 () 5 .
1. : 28
2. • : 29

52 (•) 36 2 36 3 2 . < 2013. 3. 24.>

53 () 36 4 3 . < 2013. 3. 24.>

- 1.
2.
3. 「 」 가.

가 (可檢物)

53 2() 36 2 1 30 () ()

- 1.
2. 6 2
3. () 1 가 「 」 36 1

1 가 6 2 31

30

() ()

- 1.
2. 3 4

- 1.
- 2.
- 3.
- 4.

[[2014. 10. 28.](#)]

53 3() 36 2 3
15 2
1

- 1.
- 2.
- 3.
- 4.

[[2014. 10. 28.](#)]

53 4()

[[2014. 10. 28.](#)]

54 () 37 「 」

55 () 38 1 가 16
1 30 1

1 4
2
.< [2013. 3. 24.](#)>

56 () 38 4

17
「 」 「 」 99
1

< 537 ,2012. 11. 23.>

1 () 「 」 , 1

6 , 18 , 29 38 , 42 , 48 54 , 1, 2, 10
14 , 1 , 11 22 26 29

2014 10 24 . < [2014.10.28](#)>

2 () 8788 (船舶平衡水) 2 2 "

" 2017 9 24 .

[2014.10.28]

3 () 1
 17 , 21 28 , 7 9 , 5 ,
 7 10 2014 10 24 .

[2014.10.28]

< 1 ,2013. 3. 24.>()

1 () .

2 4

5 () ⑳

㉑ (船舶平衡水) .

3 , 4 2 , 6 , 11 , 12 , 13 , 30 ,

38 5 , 44 1 50 " " " "

.

5 , 7 1 • 3 , 8 1 • 2 , 9 1 , 2 , 11 2 ,

14 1 , 2 • 3 , 4 , 5 • 6 , 19

2 5 , 21 1 , 2 , 22 1 , 2

, 3 , 23 1 , 5 , 24 1 ,

2 , 27 1 , 2 , 3 , 28 4 1) 2)

, 29 2 , 31 2 , 2 , 3 ,

32 1 • 2 , 3 , 4 , 33 1 , 2 , 34

2 , 36 1 , 2 , 3 , 5 ,

37 , 45 2 , 47 1 , 48 , 49 • , 50 ,

52 , 53 • , 55 4 , 2 2 , 4 1 , 5

4 1 , 6 1 3)) , 8 1 , 1 , 2

, 7 , 8 , 10

, 14 , 15 , 16

, 18 , 27 " "

" "

47 1 , 1 , 2 ,

7 , 8 , 10

, 14 , 15 , 18

27 " " " " .

3 2 , 9 2 19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17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② <63>

< 106 ,2014. 10. 28.>

2014 10 24 . , 13 , 20 3 , 21 , 22 , 24 5
「 」 .

< 351 ,2019. 7. 1.>

< 377 ,2019. 12. 10.>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선박평형수의 주입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 1) 항만구역 밖 또는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주입
- 2) 청수(淸水) 또는 식수 등 육상에서 공급된 물의 주입

나. 다음의 장소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그 주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항만당국이 선박평형수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항만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조치를 실행한 구역
- 2) 생물체가 물기둥(水柱)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어두운 곳
- 3) 수심이 매우 얇은 곳
- 4) 프로펠러가 침전물을 뒤섞을 수 있는 곳
- 5) 대량의 식물성 플랑크톤[적조와 같은 해조(海藻)의 번성]이 발생한 구역
- 6) 하수 배출구 부근
- 7) 조류가 더 혼탁(混濁)한 것으로 알려진 구역
- 8) 조석 플러싱[*tidal flushing*: 조류의 작용으로 만(灣)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이 혼합되어 만 외부로 배출되는 순환과정]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구역
- 9) 양식장에 근접한 구역

2. 침전물의 통제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평형수탱크의 청소 및 침전물 처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3.24>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

(제5조 관련)

1. 일반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신청하려는 면제·완화 기간
- 나.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면제·완화가 필요한 사유

2. 선박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선박명
- 나.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 다. 선적항
- 라. 총톤수
- 마. 선박소유자
- 바. 호출부호
- 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포함하여 선박에서 통상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아.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사본
-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의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이력

3. 항로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항로 및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항만 또는 장소
- 나. 1회 항해하는 경우: 출발일 및 도착일
- 다. 2회 이상 항해하는 경우: 면제·완화 기간 동안의 항해 일정 및 배출될 선박평형수의 추정량
- 라. 면제·완화 기간 동안 지정된 항구 외의 다른 항구로 항해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른 항구로의 항해일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4.10.2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4>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

1. 선박평형수 교환 방법

가. 선박평형수 교환 방법의 결정

1) 선박평형수 교환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가) 배출 후 주입 방법(sequential method): 먼저 교환하려는 선박평형수탱크를 비운 후 새로운 선박평형수를 다시 주입하는 방법
- 나) 넘침 방법(flow-through method): 새로운 선박평형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선박평형수탱크로 주입하여 그 안의 물을 넘쳐흐르게 하는 방법
- 다) 희석 방법(dilution method): 새로운 선박평형수를 선박평형수탱크의 위쪽으로 주입하고 동시에 같은 유량으로 아래쪽으로 배출하여 선박평형수 교환 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평형수탱크 안 선박평형수의 양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2) 선박평형수 교환 방법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할 것

- 가) 선박의 복원성 및 강도(強度)
- 나) 길이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 및 비틀림 응력(torsional stress)
- 다) 적하(積荷) 상태
- 라) 선박평형수 펌프 및 배관계통(선박평형수 펌프의 수·용량 및 선박평형수탱크의 배치 등)
- 마) 선박평형수 교환 시 파도에 의한 선체 진동
- 바) 해상 및 기상 조건(특히, 선박평형수탱크의 일부만 채워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의 출렁거림 현상(sloshing action)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상조건을 고려할 것)
- 사) 선수(船首)/선미(船尾) 흘수(吃水) 및 트림(trim: 선박의 앞부분의 흘수와 뒷부분의 흘수 차)
- 아) 선장과 선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
- 자) 넘침 방법으로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유의할 것
 - (1) 탱크 통풍 및 넘침관 배치의 이용가능성 및 용량
 - (2) 탱크 넘침 지점의 이용가능성 및 용량
 - (3) 선박평형수탱크의 저압(低壓) 및 과압(過壓) 방지
- 나. 선박평형수를 교환할 때에는 선박평형수 용적의 95퍼센트 이상을 새로운 선박평형수로 교환하여야 한다.

다. 넘침 방법 및 희석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을 펌핑(pumping)한 경우 나목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배 미만을 펌핑할 수 있다.

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 1) 선박이 공해(公海)로 나가는 경우
- 2) 교통 밀도가 낮은 경우
- 3) 항해 선교(船橋)와 적절한 통신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견시(見視: 눈으로 주변 상황을 관찰하는 것)를 유지하는 경우
- 4) 선박의 조정 능력이 일시적인 기간 동안 흡수와 트림 및 프로펠러 심도(深度)에 따라 지나치게 방해받지 않는 경우
- 5) 해상 상태가 적절한 경우

마. 유조선에서 분리평형수(segregated ballast) 및 맑은평형수(clean ballast)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경우 선박평형수의 표면을 육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여 기름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경우에만 펌프를 이용하여 선박의 흡수선 아래로 배출할 수 있다.

2. 선박평형수 주입 방법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에는 선박의 복원성 및 강도, 적하상태, 선수/선미 흡수 및 트림 등에 유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 비고

1. "분리평형수(segregated ballast)"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를 말한다.
2. "맑은평형수(clean ballast)"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2호에 따른 맑은평형수를 말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

1.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1)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받는 경우
 - 나) 2014년 9월 8일 이후 2017년 9월 8일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전에 받는 경우
 - 나.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 외의 선박은 2024년 9월 8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3.3.24>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 가. 위험한 속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보가 발생되도록 선박평형수 통제 구역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 다.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작동부위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일상적인 정비 및 고장해결 절차는 제조사의 운전 및 정비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비 및 수리 등 기록 사항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부분 외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부분에는 봉인을 파괴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소제, 교정 또는 수리를 위해 운전될 때마다 볼 수 있는 경고가 작동되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바. 비상 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우회 배관(by-pass)이나 경보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경보부작동(override)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여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하는 때에는 경보가 작동되어야 하고, 이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아. 검사 시에 제조사의 지침서에 따라 측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 설비의 교정성적서는 검사목적으로 선박에 비치되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제조사에 의해 인가된 사람만이 정밀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자. 처리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처리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선상(on board)에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하고 견고한 것일 것
 - 나)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설계 및 구조일 것
 - 다) 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라) 고온 표면 부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
 - 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장치의 목적, 작업조건 및 그 밖에 선상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
 - 2) 처리장치에는 운전 및 제어를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운전에는 필요한 시설들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어장치와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처리장치가 가연성(可燃性)이 있는 곳에 설치될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처리장치는 해당 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전기장치는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할 것. 다만, 위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사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구동부분은 정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차 제어 및 감시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처리에 필요한 투입량(dosages), 강도(intensities) 및 그 밖에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처리의 적절한 관리(administration)를 위하여 제어가 요구되는 다른 요소(aspects)를 자동으로 조절 및 감시하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운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연속적인 자기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시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오작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제어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와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24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을 것

나) 검사를 위하여 기록을 보여줄 수 있거나 출력할 수 있을 것

다) 제어장치를 교체할 경우, 교체전의 저장된 자료가 선상에서 24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저장 가능할 것

5) 제어장치 계기가 측정한 값의 변화, 제어장치의 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측정대상을 같은 조건 하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한 경우 개개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성질) 및 제어장치 계기의 영점화(re-zero)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선상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박평형수교환설비

가. 선박평형수 펌프 및 관장치는 운전, 정비 및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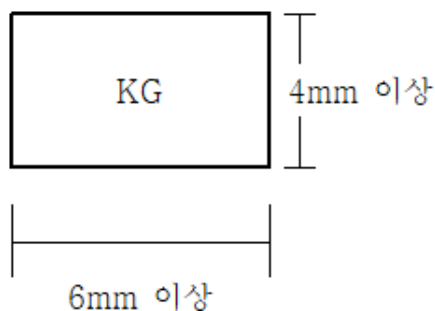
나. 선박평형수 주입 또는 배출에 대한 자동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기록은 쉽게 저장되고 확인 가능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 비고

1. "처리장치"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제어장치"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운전 및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말한다.
3. "감시장치"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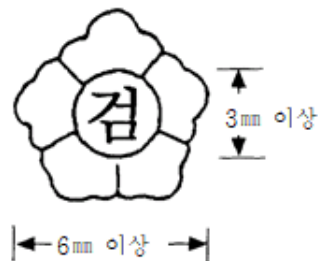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14.10.28.>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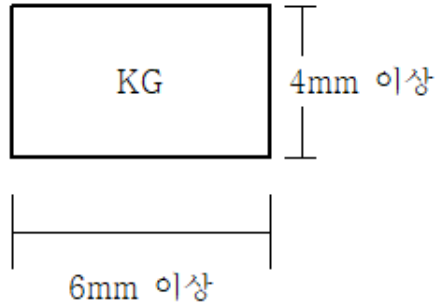
비고

위의 표시 외에 검인기관의 약호(略號) 및 검인일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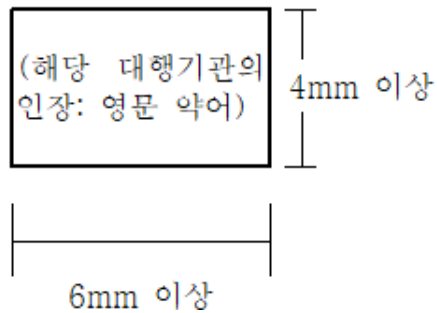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7. 1.>

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

1. 해양수산부장관의 표시[증인(證印)]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표시[증인(證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 (제25조 관련)

검사 종류	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	<p>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인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3) 승인된 도면 <p>나. 배관·밸브 및 펌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p> <p>다. 선박평형수탱크의 맨홀을 열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p> <p>라.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개방할 것</p> <p>마. 선박평형수교환설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2)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p>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력시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압력시험을 생략한다. 2)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제조자가 정한 검사 방법을 따를 수 있다) 3) 처리물질 비치 및 투여 설명서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할 것(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록장치의 기록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종 중간검사	<p>가.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준비를 할 것</p> <p>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는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마목의 준비를 할 것</p> <p>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바목2)부터 4)까지의 준비를 할 것</p>
제2종 중간검사	<p>가.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가목의 준비를 할 것</p> <p>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p> <p>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바목2)부터 4)까지의 준비를 할 것</p>
임시검사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

1. 공통서류

가. 형식승인시험계획서

- 1)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 2)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 3)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 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 4)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일정 및 보고사항

나. 제조·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한정한다)

라. 사업체의 개요(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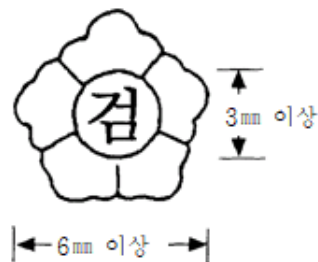
마.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형식승인시험의 종류별 서류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에서 형식승인시험의 종류별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서류로서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



비고

위의 표시 외에 검정기관의 약호 및 검정일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7. 1.>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등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호	형식승인 취소		
나.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2호	형식승인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3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형식승인 취소
라.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호	형식승인 취소		
마. 삭제 <2019. 7. 1.>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4.10.28.>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 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제 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험장비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나. 시험 신청 시 시험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 다.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 관리자 및 지원인력을 보유할 것
- 라. 비밀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
-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2. 시험기관별 세부 기준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것

- 가. 적합성시험기관
ISO 9000시리즈 이상
- 나. 환경시험기관, 육상시험기관 및 선상시험기관
ISO/IEC 17025의 품질관리체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9. 7. 1.>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삭제 <2014.10.28.>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6호	지정취소		
사.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3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신설 2014.10.28.>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37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 서류

가. 선상(on board)에서 선박평형수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물질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고, 모든 관련 화학물질(relevant chemicals)에 대해 화학적 식별(chemical identification)을 적은 서류

나. 처리물질 및 조제물(preparation)에 대한 다음의 서류

1) 조제물을 구성하는 임의의 성분에 따른 반응이나 속성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가) 수중식물, 무척추동물, 어류 및 그 밖에 민감하고 대표적인 유기체(sensitive and representative organisms)를 포함하는 생물종에 대한 영향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수중생물에 대한 급성 독성(acute aquatic toxicity)
- (2) 수중생물에 대한 만성 독성(chronic aquatic toxicity)
- (3) 내분비파괴(endocrine disruption)
- (4) 침전물독성(sediment toxicity)
- (5) 생체이용율(bioavailability), 생물간의 확대(biomagnification) 및 생물농축(bioconcentration)
- (6) 먹이망(food web) 및 개체군 효과(population effects)

나) 포유류에 대한 독성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급성 독성(acute toxicity)
- (2) 피부 및 눈에 대한 영향
- (3) 만성 및 장기간 독성(chronic and long-term toxicity)
- (4) 발생 및 생식 독성(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ity)
- (5) 발암성(carcinogenicity)
- (6) 변이원성(變異原性, mutagenicity)

다) 호기성(好氣性) 및 혐기성(嫌氣性) 조건에서의 환경적 운명(environmental fate) 및 영향에 대한 다음의 자료

- (1) 생물 또는 무생물의 분해 형태(modes of degradation)
- (2)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분배계수(partition coefficient) 및 옥타놀/물 분배계수(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 (3) 선박평형수, 해수 또는 담수 등 관련 매개체(relevant media)에서의 주대사

물질의 잠복성(persistence) 및 식별(identification)

- (4) 유기물질과의 반응성
- (5) 야생 및 저서(低棲) 생물 서식지에 대한 잠재적·물리적 영향
- (6) 수산물에의 잠재적 잔류성
- (7) 그 밖에 이미 알려진 상호작용 효과

라) 처리물질·조제물 및 처리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속성(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녹는점
- (2) 끓는점
- (3) 가연성
- (4) 밀도(상대밀도)
- (5) 증기압 및 증기밀도
- (6) 수용성 및 해리상수(解離常數, dissociation constant)(pKa)
- (7) 산화 및 환원전위
- (8) 정상적인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설비에 대한 부식성
- (9) 자연발화 온도
- (10) 그 밖에 이미 알려진 물리·화학적 위험요소

마) 환경관련 농도에서의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s at environmentally relevant concentrations)에 관한 자료

2) 시험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및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체제에 관한 서류. 이 경우 품질관리계획서(QMP) 및 품질보증과제계획서(QAPP)와 각 계획서의 준비에 관한 지침서는 다른 지침서 및 일반적인 품질관리 정보와 같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사용하는 양식(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시험기관(협력업체 및 외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의 품질관리/품질경영체제 및 방침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QMP)

나) 품질보증과제계획서(QAPP)

3)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평가를 위하여 국제기구가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등재 시 사용된 관계 서류

4) 요구되는 투여량 및 유지시간을 포함하여 선박평형수 관리에 필요한 조제물의 적용 방법에 관한 서류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 시험성적서의 품질, 유해특성 및 평가와 연계된 불확실성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2. 유해특성 관련 서류

가. 잠복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에 관한 서류

잠복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 등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고유특성에 대한 다음의 시험에 관한 서류

1) 잠복성시험

잠복성은 가능한 한 관련된 조건들 아래에서 반감기(half-life)를 결정하기 위한 가상시험 방법(simulation test system)으로 평가하고, 생물적 분해(biodegradation) 시험은 물질들이 용이하게 분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반감기의 결정에는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생물축적성시험

(잠재적)생물축적성에 대한 시험은 해양(또는 담수) 생물의 생물농축계수(BCF: bioconcentration factors)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용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Log Pow: logarithm of the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가 3 미만(Log Pow<3)인 경우에는 생물농축계수 값은 (정량적)구조-활성 상관[(Q)SAR]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3) 독성시험

원칙적으로 민감한 생존단계(sensitive life stages)를 이상적으로 포괄하는 급성(acute) 또는 만성(chronic) 생물독성(ecotoxicity) 자료가 독성 기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나. 처리된 선박평형수의 독성시험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다음의 기준에 따른 처리물질, 조제물 및 처리된 배출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에 관한 서류. 이 경우 배출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에 관한 서류는 처리물질, 조제물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합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가) 기본승인의 배출시험은 조제물로 처리한 직후의 배출 선박평형수를 가상(simulation)하여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실시할 것

나) 최종승인의 배출시험은 처리된 배출 선박평형수를 사용하여 형식승인시험의 육상시험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할 것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조제물 및 관련 화학물질의 독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절차를 사용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급성 및 만성 독성시험 자료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조제물 및 관련 화학물질의 유해 영향을 경감 또는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부터 처리된 배출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독

성시험을 실시할 것

나) 배출 선박평형수 독성시험은 육상시험 설비에서 나온 표본(sample)에 대하여 실시할 것. 이 경우 해당 표본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친 배출 선박평형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다) 독성시험은 민감한 생존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시험 종(어류, 무척추동물 및 식물)을 대상으로 한 만성시험 방법을 포함할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덜 치명적인 (성장) 종료점(end point) 및 생존 종료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해수시험 또는 청수(淸水)시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제공되는 시험결과에는 시험 생물체가 24시간, 48시간, 72시간 및 96시간 후에 X% 사멸하는 급성 치사농도(LCx), 무유해성 영향농도(NOAECS), 만성 최대무작용 농도(NOEC) 또는 시험 생물체의 X%가 영향을 받는 영향농도(ECx) 등의 값으로서 시험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를 포함할 것

마) 100% 배출 선박평형수부터 단계별로 희석된 선박평형수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준을 판정하기 위하여 통계지표(NOEC 또는 ECx)를 사용하여 시험할 것. 이 경우 초기 분석은 한 장소로 다수의 배출 선박평형수의 유입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출 선박평형수의 희석 용적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보수적인 접근방법(모델이나 Plume 분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바) 급성 및 만성 독성시험자료는 처리된 선박평형수 배출 시 무해 영향농도에 이를 때까지의 보관 유지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것. 이 경우 반감기, 쇠퇴율, 투여율, 장치의 크기 및 시간 연속구간 별 독성시험 결과가 결정되면 계산된 모델에 따라 선박평형수 배출 전에 처리된 선박평형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3) 총 잔류산화물(TRO) 및 총 잔류염소(TRC)에 대한 정보는 선박평형수 처리절차 및 배출 선박평형수의 평가를 위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서에 포함될 것

다. 유해특성 및 분석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적은 서류: 기본승인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처리물질 및 조제물에 대한 거동 및 영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고, 예비유해 특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 1) 배출 선박평형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물질 또는 조제물 뿐만 아니라 배출 선박평형수도 독성시험을 할 것
- 2) 자유 래디칼(free radicals)을 생성시킬 수 있는 처리물질 및 조제물과 유기물의 반응은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성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성적으로 기술할 것

- 3) 선박평형수와 관련된 매개체(선박평형수, 해수 및 담수)에서 관련 대사물질을 식별하기 위하여 호기성 및 비호기성 조건에서 처리물질의 무생물 및 생물적인 분해의 속도를 평가할 것
- 4) 산성도(pH), 산화 환원 반응 및 온도와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의 분해율에 관계되는 처리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의 잠복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기성 및 비호기성 조건에서 처리물질의 무생물 및 생물적인 분해 속도를 평가할 것
- 5) 처리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의 분배계수[고체와 액체 간의 분배계수(Kd) 또는 유기탄소상대 분배계수(Koc)]를 결정할 것
- 6)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상용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LogPow)가 3보다 큰 경우에는 잠재적인 생물축적성은 해수 또는 담수생물(어류 또는 조개류)에 따라 평가될 것
- 7)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거동 및 반응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에 대한 물질의 배출농도를 예측할 것
- 8) 처리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의 영향평가(effect assessment)는 원칙적으로 원시 생산자[예를 들어 조류(藻類) 또는 해조류], 소비자(예를 들어 갑각류), 포식자(예를 들어 어류)인 수중 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 생체독성 자료에 대한 기록에 근거하여야 하고, 포유류 및 조류(鳥類)의 상위에 위치하는 포식자에 2차 유해요소(secondary poisoning) 뿐 아니라 침전종(sediment species)에 대한 자료도 포함할 것.
- 9) 8)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소로 의심되는 물질이 잠재적인 생물축적성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2차 유해요소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아니할 것[예를 들어 지방이 5 퍼센트인 생물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L/kg(흡윤중량 기준) 미만인 경우(BCF<500L/kg)]
- 10) 침전물에 대한 분배(partition)와 관련한 물질의 잠재성(potential)이 낮다면 침전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아니할 것[예를 들어 유기탄소상대 분배계수(Koc)가 500L/kg 미만인 경우]
- 11) 처리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의 영향평가는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및 내분비 파괴특성에 대한 선별을 포함할 것
- 12) 처리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의 영향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서(1993) 또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서에 근거할 것
- 13)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는 배출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와 비교하여야 하고, 독성이 없다거나 예상하지 아니한 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영향평가에 대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 14) 배출 선박평형수에 있어서 처리물질 및 조제물을 감시하기에 적합한 분석적 방법이 사용될 것

3.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사용에 관한 서류

가.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취급

- 1)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승인신청서에는 처리물질 및 조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 이 경우 선박평형수에 첨가할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양 및 선박평형수에 허용되는 처리물질의 최고 농도는 제조자가 제공하는 지침서에 설명되어야 하고, 관련 설비는 처리물질의 최대 투여량 및 최고 허용배출농도가 항상 초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2) 평가는 기존의 국제기구의 협약, 코드 및 지침을 이용하여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 약품의 선상에서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을 보장할 것

나. 위험성에 관한 문서 및 표식

- 1) 신청서에는 필요한 경우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물질안전보건정보를 포함할 것.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정보는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보관 중 분해 및 화학적 상호반응에 따른 영향과 함께 적합한 보관 및 취급 방법에 대하여 적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위험성에 관한 문서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과 일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위험성 관리 요건에 따를 것

가) 국제연합(UN)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GHS)

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및 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의 유해물질평가절차서 등 같은 관련 국제해사기구의 규칙과 지침서

다. 사용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서류

선상에서의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상세 절차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처리물질 및 조제물의 최고허용농도 및 최대배출농도 등과 같은 사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4. 배출시나리오(ESD: Emission Scenario Document) 및 인체노출시나리오(HES: Human Exposure Scenario)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유해성 평가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배출시나리오 및 인체노출시나리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비고

1. "배출 선박평형수"란 선박 밖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2. "조제물"이란 어떠한 첨가제를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형태의 물질로서, 선박평형수 관리를 목적으로 선상에서 생성되는 모든 처리물질 및 국제협약에 적합하게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생성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3. "관련 화학물질"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사용하는 동안과 사용 후에 선박평형수 또는 유입환경에서 생성되어 선박의 안전, 수중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전이물질(轉移物質) 또는 반응생성물(反應生成物)을 말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신설 2014.10.28.>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37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등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지정취소		
다.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아.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제8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신설 2019. 7. 1.>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물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해성평가 또는 생태독성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양학·생물학·화학·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해양학·생물학·화학·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해양학·생물학·화학·환경공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 또는 기관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기계·기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기계·기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기계·기관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기계·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전자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행일:2017.9.8.]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설 2014.10.28.>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7. 1.>

수수료 기준 (제55조제1항 관련)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의 40퍼센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500원
4. 법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선박 규모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400톤 미만	6만7천원	3만7천원	2만6천원	9천원
400톤 이상 1천톤 미만	7만2천원	4만6천원	3만2천원	1만원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9만1천원	5만5천원	3만8천원	1만1천원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10만5천원	6만3천원	4만4천원	1만3천원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1만8천원	7만5천원	5만3천원	1만4천원
1만톤 이상	18만2천원	9만9천원	6만9천원	1만8천원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를 1회 검사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사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5. 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6.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처리 용량(m ³ /h)	수수료
500 미만	2만1천원
500 이상	3만6천원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정하는 경우를 1회 검정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정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정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시행일:2017.9.8.]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56조제1항 관련)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	30만원
근무시간 외	45만원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추가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10.2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0.2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0.2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제출일(연도/월/일): / / Date of Submission(YYYY/MM/DD):		제출시간 (24.00 GST): Time of Submission		수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AMENDED FORM Yes No	
1. 선박 정보 SHIP INFORMATION		2. 항해 정보 VOYAGE INFORMATION		3. 선박평형수 사용 및 용량 BALLAST WATER USAGE AND CAPACITY	
선박명: Ship Name		도착항: Arrival Port		총 선박평형수 보유량 Total Ballast Water on Board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도착일(YYYY/MM/DD): Arrival Date			
선박소유자: Owner		대리점: Agent		부피 Volume	
용도: Type		이전 항구: Last Port	국가: Country	단위 Unit	
총톤수: Gross Tonnage		다음 항구: Next Port	국가: Country	선박평 No. of T	
건조일자(YYYY/MM/DD): Date of Construction		다음 항구(2): Next Port(2)	국가: Country	선박평형수 용량 Total Ballast Water Capacity	
국적: [Flag]		다음 항구(3): Next Port(3)	국가: Country		
				부피 Volume	
				단위 Unit	
				선박평 No. of T	
				m ³	

4. 선박평형수관리
BALLAST WATER MANAGEMENT

배출되어야 하는 선박평형수탱크의 총 수: ; 배출되어야 하는 선박평형수탱크 중 교환을 한 선박평형수탱크 수: ;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사용하여 처리한 선박
Total No. Ballast Water Tanks to be discharged: ; Of tanks to be discharged, how many: underwent exchange ; were treated using a Ballast Water Manu

사용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상세 (제조사명 및 모델):
Please specify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used, if any (Manufacturer, Model)

선박평형수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If n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ducted, state reason why not:

선내에 승인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해당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실행은? 예 아니요
Approved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on board? YES NO Management plan implemented? YES NO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Ballast water record book on board? YES NO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를 비치하였는가? 예 아니요
Does ship carry an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 YES NO

발급일(YYYY/MM/DD): 만료일(YYYY/MM/DD):
Date of issue Expiry Date

증서발급 당국: 발급장소:
Authority that issued Certificate Place of issue

제D-2규칙을 지켜야 하는 일자(YYYY/MM/DD): / /
Date Required to Meet Regulation D-2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4.10.28.>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팩스번호/전자우편	
신청내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용기술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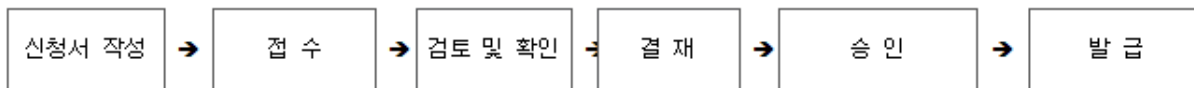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9. 7. 1.>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팩스번호/전 자우편	
설치선박	선명	선박번호	
	출톤수	국적(선적)	
	선박의 종류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8조의2제 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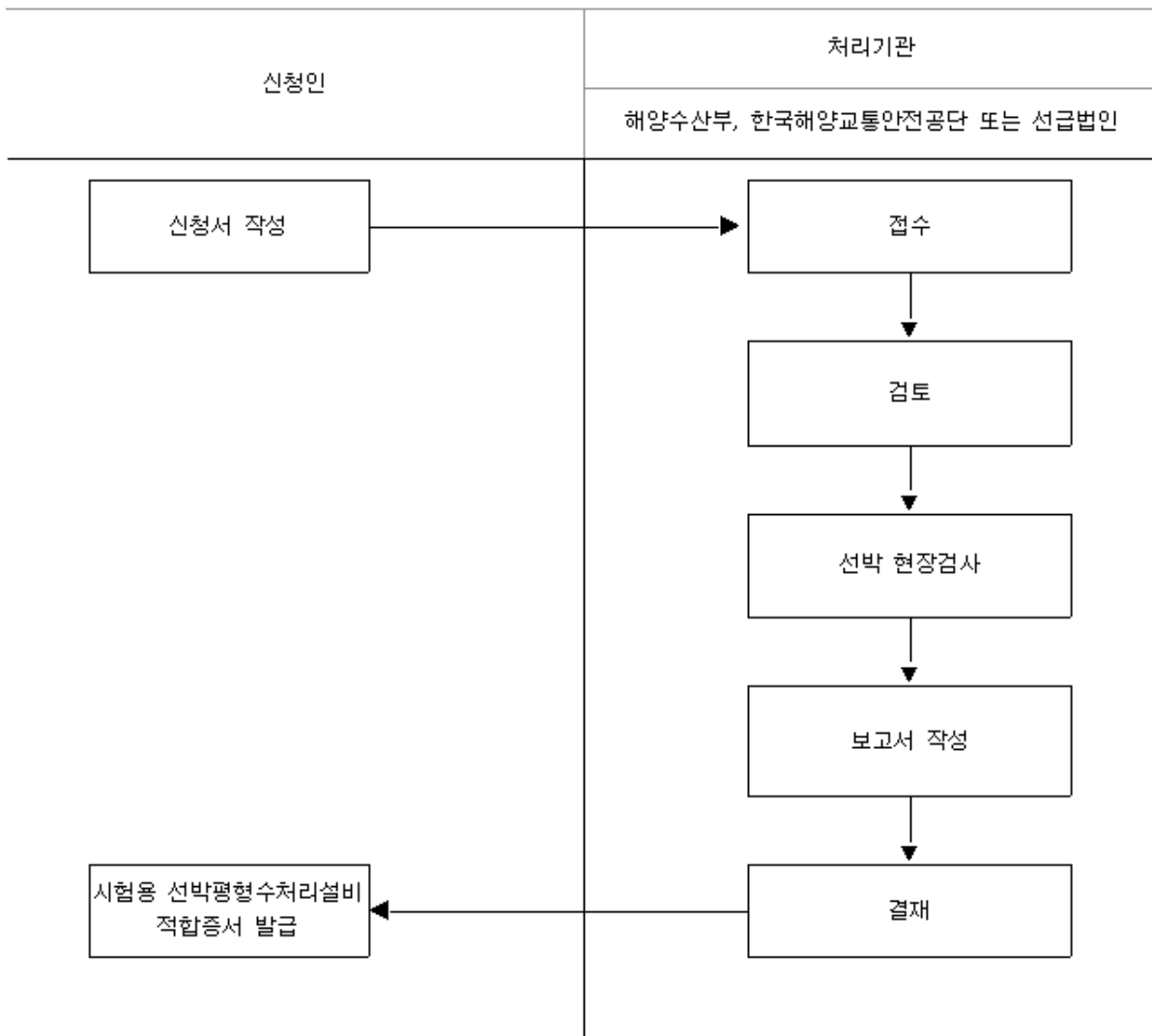
첨부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19. 7. 1.>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Statement of Compliance for a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및 「시험용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지침서(G10)」 [결의서 MEPC.140(54)]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이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Guidelines For Approval And Oversight Of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y Programmes (G10)(Resolution MEPC.140(54)),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번호 IMO Number*

선박평형수의 용량, 용적 및 유량

Ballast Water Capacity, Volume and Flow Rates: _____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개조된 선박의 경우) 개조가 시작된 날짜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was commenced _____

제D-2규칙에 부합해야 하는 기한

Date by which the ship is required to comply with regulation D-2 _____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날짜

Date on which the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was installed _____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y manufacturer _____

기술의 상품명

Trade name of technology _____

* 결의서 A.600(16)에 따라 기구에서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체계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제2쪽)

제조번호 또는 그 밖의 식별 표시

Serial number or other identifying marking: _____

처리물질명과 기본 승인의 상세 정보

Name of Active Substance and details of Basic Approval: _____

시험용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

Brief description of the prototype technology: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제D-4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_____년 ____월 ____일에 승인한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That the ship has a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which is subject to a programm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4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on _____.

2. 결의서 MEPC.140(54) 부록 제4항에 따라 검사되어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치되었다.

That the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y installation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4 of the annex to resolution MEPC.140(54).

3. 승인된 시험계획서의 사본이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위한 장비,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와 함께 선상에 갖추어져 있다.

A copy of the approved programme is on board the ship together with equipment,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nuals for the prototype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y.

이 증서는 _____ 까지 유효하다.

This Statement is valid until _____.

증서 발급장소

Place of issue of Statement: _____

발급일

Date of issue: _____

해양수산부장관 (한글 및 영문) (직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직인)

선급법인명 (한글 및 영문)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용도	재화 중량 톤수	
	주요 항로	건조 연월일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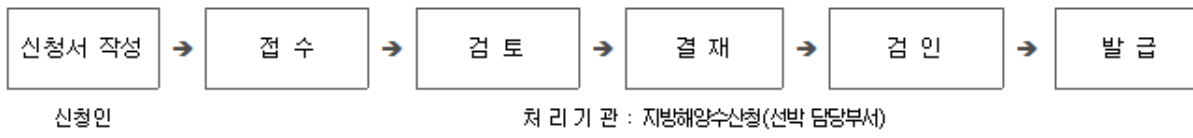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	수수료	3천원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1. 소개

Introduction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부속서 제B-2규칙에 따라 이 기록부에는 각각의 선박평형수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부는 해양과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B-2 of the Annex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a record is to be kept of each Ballast Water operation. This includes discharges at sea and to reception facilities.

2. 선박평형수와 선박평형수 관리

Ballast Water and Ballast Water Management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출수, 복원성 또는 선체 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싣고 있는 물 및 물에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선박평형수관리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에 따라 승인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Ballast Water means water with its suspended matter taken on board a ship to control trim, list, draught, stability, or stresses of a ship. Management of Ballast Wate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n approved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into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3. 선박평형수 기록부 기재

Entries in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선박평형수기록부 기재는 다음의 예시에 따른다.

Entries in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shall be made each of the following occasions:

3.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When Ballast Water is taken on board:

1. 주입 일시,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외항의 경우 수심
Date, time and location of port or facility of uptake(port or lat/long), depth if outside port
2. 주입량(m³)
Estimated volume of uptake in cubic metres
3.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3.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Whenever Ballast Water is circulated or treated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purposes:

1. 작업일시
Date and time of operation
2. 순환되었거나 처리된 양(m³)
Estimated volume circulated or treated(in cubic metres)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Whether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4.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제3쪽)

3.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When Ballast Water is discharged into the sea

1. 배출 일시, 배출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Date, time and location of port or facility of discharged(port or lat/long)
2. 잔류량을 포함한 배출량(m³)
Estimated volume discharged in cubic metres plus remaining volume in cubic metres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Whether approved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has been implemented prior to discharge
4.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3.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When Ballast Water is discharged to a reception facility:

1. 주입 일시 및 장소
Date, time, and location of uptake
2. 배출 일시 및 장소
Date, time, and location of discharge
3. 항구 또는 처리시설
Port or facility
4. 배출 또는 주입량(m³)
Estimated volume discharged or taken up, in cubic metres
5.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Whether approved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had been implemented prior to discharged
6.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3.5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또는 배출할 때

Accidental or other exceptional uptake or discharges of Ballast Water:

1. 일시 및 주입 장소
Date, time, and location of uptake
2. 배출당시의 선박이 위치한 항구 또는 장소
Port or position of ship at time of occurrence
3. 배출된 선박평형수의 양(m³)
Estimated volume of Ballast Water discharged
4. 주입, 배출, 누출 또는 상실, 발생 배경 및 일반사항
Circumstances of uptake, discharge, escape or loss, the reason therefor and general remarks
5.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Whether approved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had been implemented prior to discharge
6.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3.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Additional operational procedure and general remarks

(제4쪽)

4. 선박평형수 용량

Volume of Ballast Water

선박평형수의 양은 m^3 로 산정되어야 한다. 선박평형수기록부는 선박평형수의 양을 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선박평형수의 양 산정의 정확성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he volume of Ballast Water on board should be estimated in cubic metres.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contains many references to estimated volume of Ballast Water. It is recognized that the accuracy of estimating volumes of ballast is left to interpretation.

선박평형수 작업 기록
Record of Ballast Water Operations

선박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일시 Date	항목(번호) Item(number)	작업기록/해당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s in charge

선장의 서명:

Signature of master _____

비고

Remark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할 것

The entries in the Ballast Water Record Book shall be in English in parallel with Korean or in English only.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건조번호	
	출톤수	국적(선적)	
	용도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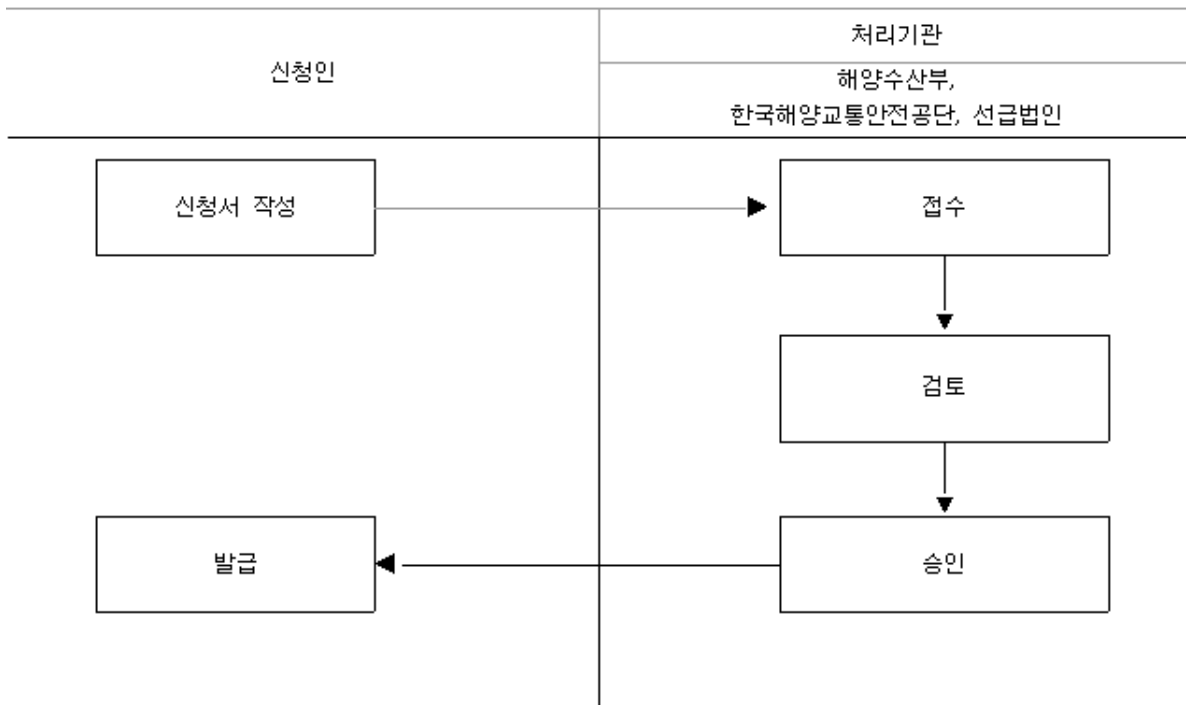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축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 자우편	
설치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선박의 종류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축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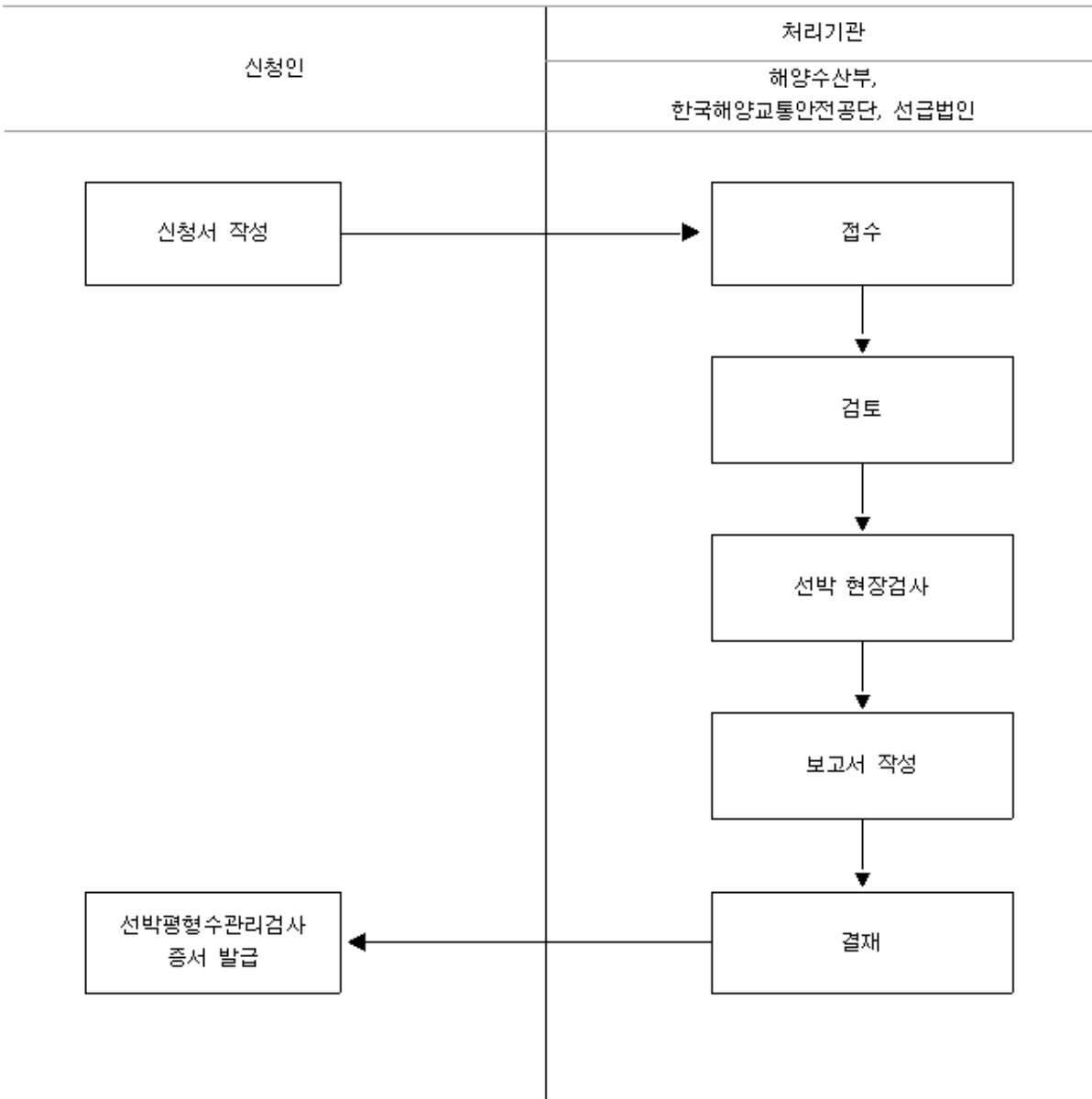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p>첨부서류</p>	<p>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p> <p>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p>	<p>수수료 별표 16에 따름</p>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7. 1.>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이 발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번호 IMO Number*

건조일

Date of Construction: _____

선박평형수 용량(m³)

Ballast Water Capacity(in cubic meters): _____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의 상세 설명

Details of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used

사용된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Method of Ballast Water Management used: _____

설치일

Date installed(if applicable): _____

제조업체

Name of manufacturer(if applicable): _____

선박에 적용된 주요 선박평형수관리방법은

The principal Ballast Water Management method(s) employed on this ship is/are:

제D-1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1

제D-2규칙과 일치하여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D-2

(설명)

(describe) _____

선박은 제D-4규칙에 적용된다.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D-4.

* 결의안 A.600(15)에 따라 기구에서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체계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제2쪽)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1.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의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2.해당 선박의 검사 결과 이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는 이 협약 부속서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at the survey shows that Ballast Water Management on the ship complies with the Annex to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_____ 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1.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일(dd/mm/yyyy):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dd/mm/yyyy):

증서발급 장소

Issued at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 (한글 및 영문)

210mm×297mm[백상지(120g/㎡)]

(제4쪽)

제E-5.8.3규칙에 따른 제2종/제1종* 중간검사
ANNUAL/INTERMEDIA*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8.3규칙에서 요구하는 제2종/제1종* 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8.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E-5.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EN 5 YEARS WHERE REGULATION E-5.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제E-5.3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with E-5.3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E-5.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E-5.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협약의 부속서 제E-5.4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5쪽)

제E-5.5규칙이나 제E-5.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항구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E-5.5 OR E-5.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E-5.5규칙과 제E-5.6규칙*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5. of E-5.6*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제E-5.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2종 중간검사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E-5.8 APPLIES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_____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이 협약의 제E-5.8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2종 중간검사일은 _____ 이다.

This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5.4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증서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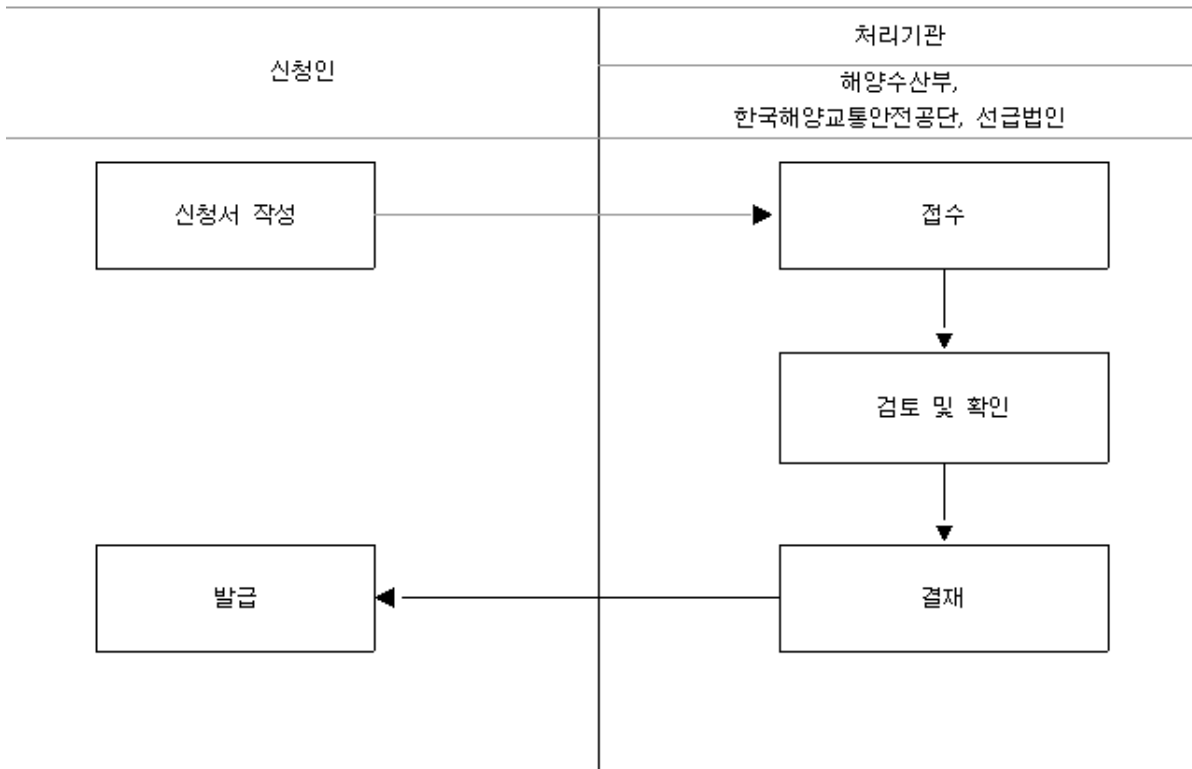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평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1.>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MEPC.279(70)에 포함된 지침서의 상세요건에 따라서 아래의 선박 평형수처리설비가 검사/시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 증서는 아래에 기재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listed below has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contained in IMO resolution MEPC 279(70).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referred to below.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명칭

Nam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manufactured by: _____

형식 및 모델명

Under type and model designation(s) _____

and incorporating:

장비 및 조립도면번호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date: _____ 날짜

기타 장비의 제조자

Other equipment manufactured by:

장비 및 조립도면번호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date: _____ 날짜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m³/h) _____

이 형식승인서의 사본은 선박검사를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선박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형식승인시험계획서와 형식승인시험결과보고서 사본은 선박검사 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형식승인서가 타 주관청의 승인에 기초해서 발행되었다면 그 형식승인증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Type Approval Certificate, shall be carried on board a ship fitted with thi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A reference to the test protocol and a copy of the test results should be available for inspection on board the ship. If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is issued based on approval by another Administration, reference to that Type Approval Certificate shall be made.

운전제한조건은 이 증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Limiting Operating Conditions imposed are described in this document.

(온도 °C / 염분 PSU)

(Temperature °C / Salinity PSU)

기타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ther restrictions imposed include the following

본장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his equipment has been designed for operation in the following conditions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_____

주관청

Administration of _____

증서 발급일

Issued _____

증서 유효일

Valid until _____

210mm × 297mm [보존용지 (1종) 220g/㎡]

(제2쪽)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추록
SUPPLEMENT TO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승인번호
 Certificate No.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결과와 환경시험 및 육상·선상시험의 세부사항은 2016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규칙(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MEPC.279(70))에 따라서 수행된 것입니다.
 Test results and details of environmental test, land-based and shipboard tests conducted on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2016 Guidelines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IMO Resolution MEPC.279(70)).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ype: _____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_____ m³/h
 제조사
 Manufactured by _____
2. 처리물질의 종류
 The Active Substance _____
- 2.1 처리물질의 최대 사용량(또는 UV 방식의 경우 최대 조사량)
 Max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aximum radiation dosage*: _____
- 2.2 처리물질의 최저 사용량(또는 UV 방식의 경우 최저 조사량)
 Min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inimum radiation dosage*: _____
3. 중화제의 종류
 Substance for Neutralization of the Active Substance _____
4. 배출시 최대 TRD 농도(또는 UV 방식의 경우 배출시 조사량 허용범위)
 Maximum Allowable Discharge Concentration of TRD*/Permitted range of radiation dosage* at discharge: _____
- 4.1 그 밖의 사용물질(해당시만)
 Substances for any other use _____
5. 유입해수의 허용 온도 및 염분 범위
 Permitted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seawater inlet _____ / _____
6. 육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based test results
- 6.1 시험을 수행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_____
- 6.2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_____ m³/h
- 6.3 시험시 온도 및 염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 _____
- 6.4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based test results
- 6.4.1 해수
 Marine water: (_____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µm 이상의 생물 Organisms ≥ 50 µm (Individuals/m ³)									
10 µm 이상 50 µm 미만의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µm (Individuals/mL)									
총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제3쪽)

6.4.2 기수

Blackish water :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의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의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6.4.3 담수

Fresh water :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의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의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6.4.4 저염분 조건

Condition of Low Salinity :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의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의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mu\text{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제4쪽)

7. 선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based test results

7.1 시험을 수행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 _____

7.2 시험장소

Place of test : _____

7.3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 _____ m³/h

7.4 시험시 온도 및 염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 _____

7.5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 based test results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µm 이상의 생물 Organisms ≥ 50 µm (individuals/m ³)									
10 µm 이상 50 µ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and < 50 µ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ic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7.6 물리화학 및 수질 조건

Physical and water quality conditions

변수 (Parameter)	주입수 Uptake Water			배출시 미처리수 Control Water at Discharge			배출시 처리수 Treated Water at Discharge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염분 Salinity (PSU)									
온도 Water temp. (°C)									
총부유물질량 Total Suspended Solids (TSS) (mg/L)									
입자성 유기탄소량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mg/L)									

8. 재생장평가결과

Evaluation result for regrowth

8.1 육상시험 시 선박평형수 처리 후 배출하기 위해 적용된 유지시간

Applied holding time during land-based testing to discharge ballast water after treatment:
day(s) or hour(s)

(제5쪽)

8.2 재성장 시험결과(육상시험의 유지시간이 5일보다 짧은 경우)

Testing results for regrowth (in case of land-based testing being performed with a holding time of less than five days)

시험결과 Test Results	육상시험 (Land-based testing)						선상시험 (shipboard testing)		추가 시험실 규모 시험 (Additional bench-scale testing)			
	해수 (marine)		기수 (brackish)		담수 (fresh)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3회 3rd	4회 4th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1회 1st	2회 2nd						
50 µm 이상인 생물 Organisms ≥ 50 µm (individuals/m ³)												
10 µm 이상 50 µm 미만인 생물 Organisms ≥ 10 µm and < 50 µm (individuals/mL)												
종속영양세균 Heterotrophic bacteria (cfu/mL)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cfu/100mL)												
장구균 Enterococci (cfu/100mL)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Toxicogen) <i>Vibrio cholerae</i> (01, 0139) (cfu/100mL)												

9. 승인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성품 목록

Components list of BWMS approved

10.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10.1 제조자의 장비 및 조립 도면 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10.2 그 밖의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11. 비고

Remark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_____
주관청
Administration of _____
증서 발급일
Issued _____
증서 유효일
Valid until _____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제조사 (수입하는 경우)	상호		
	주소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날짜			
받으려는 시험의 종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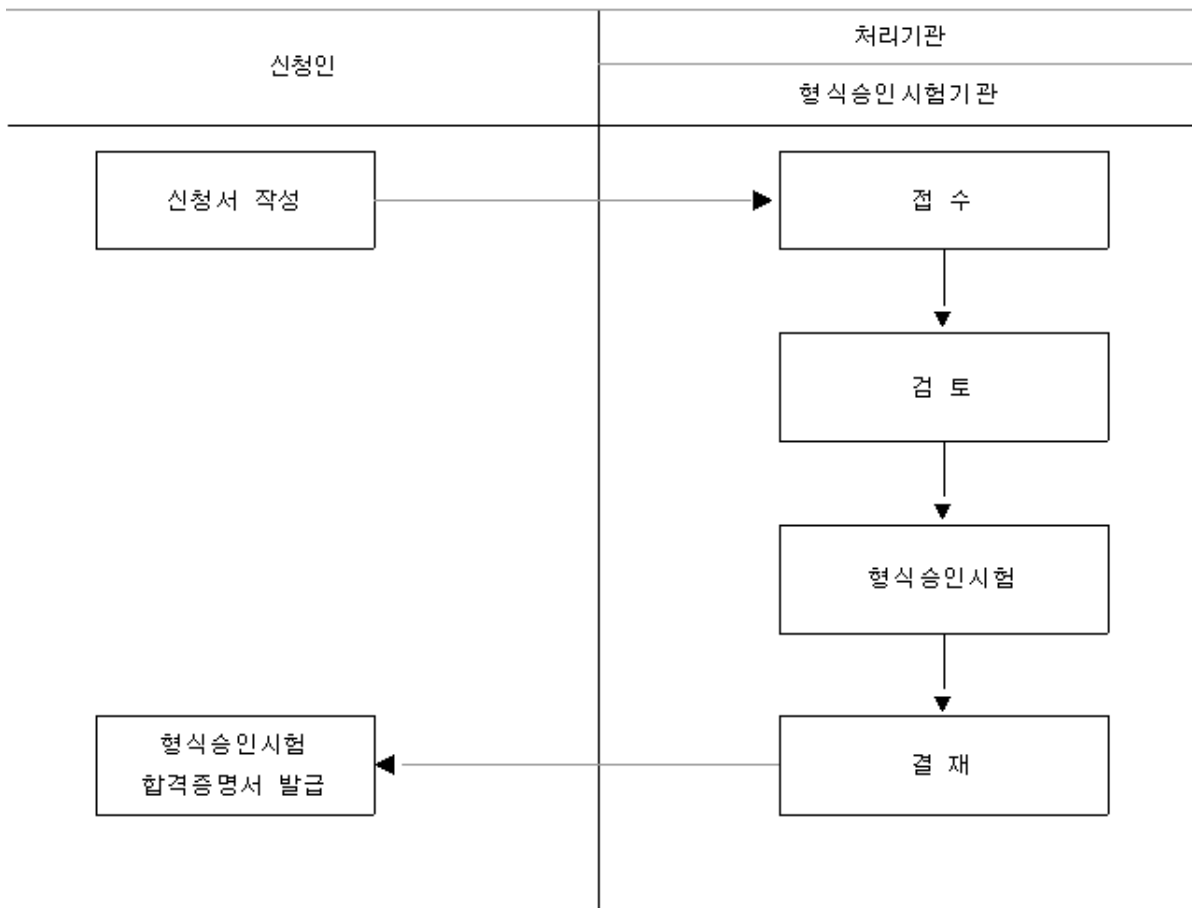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2.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사	상호	
	주소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제 조 일, 제 조 번 호 및 시 험 일 자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형식승인시험기관의 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12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제조사 (수입하는 경우)	상호		
	주소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형식승인 받은 날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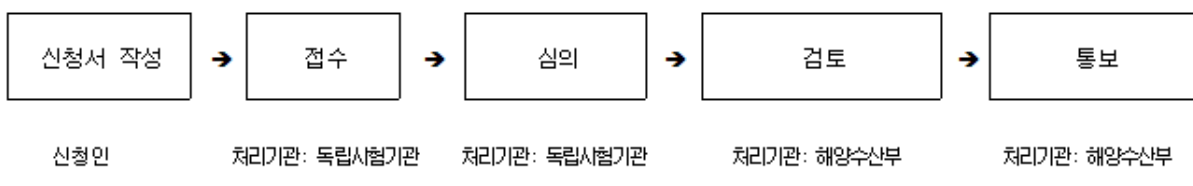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독립시험기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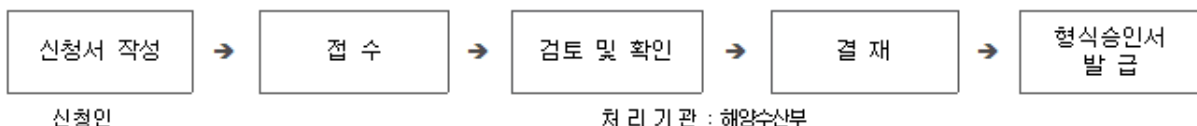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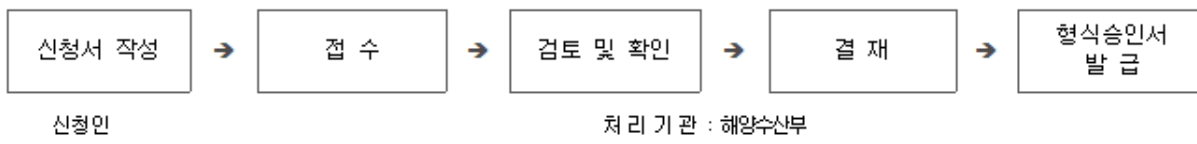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없음	수수료 3,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수량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검정을 받으려는 장소 및 날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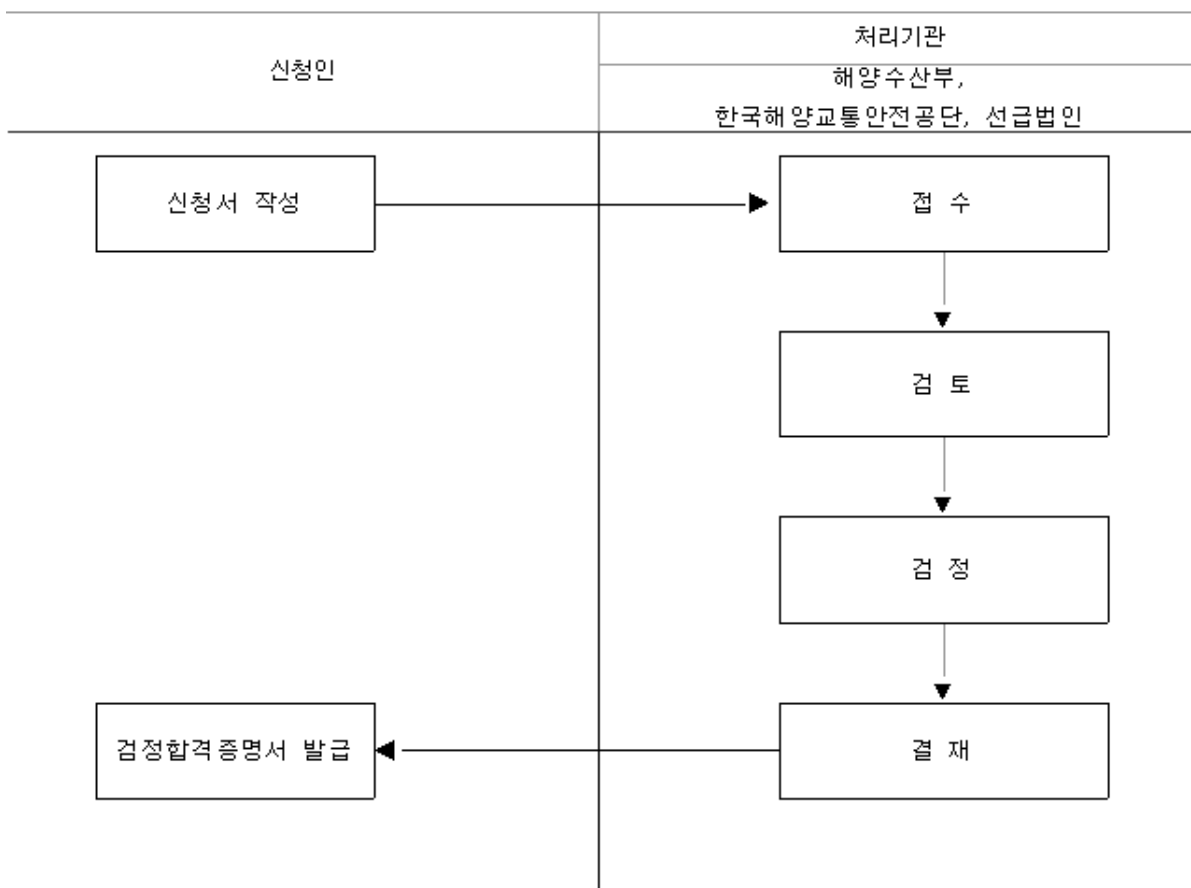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배치도·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

제 호
Certificate No.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1. 품명 :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모델 :
Type · Model
3. 정격처리 용량 :
Treatment Rated Capacity
4. 수량 및 일련번호 :
Quantity and Serial No.
5. 형식승인번호 :
Type Approval No.
6. 형식승인 연월일 :
Date of Type Approval
7. 제조자(수입자) 성명 :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조자(수입자) 주소 :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9. 제조(수입) 연월일 :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10. 제조번호 :
No. of manufacture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17.8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nd Article 3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서명 또는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297mm [택상지(12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4.10.28.>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형식승인서 증서번호			발급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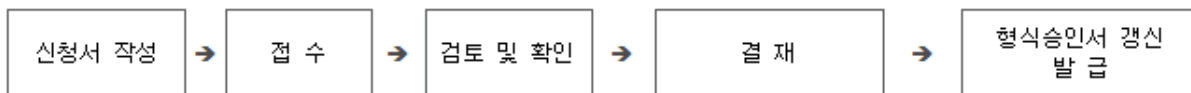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서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의무 승계일 (합병일)		
권리·의무 승계 (합병)의 사유		
승계 후 형식승인서 변경 기재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공급자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기타 장비의 제조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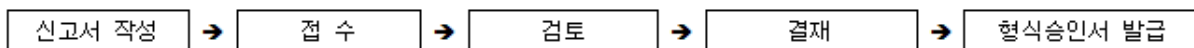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7. 1.>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한글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지정받으려는 형식승인 시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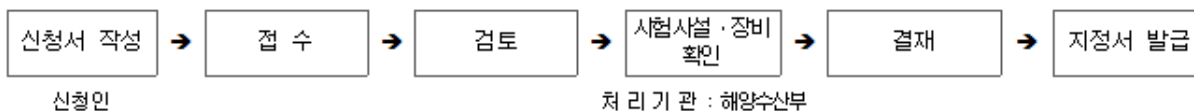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p>1. 지정 신청의 경우</p> <p>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p> <p>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p>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p> <p>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p> <p>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p> <p>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동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p>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p> <p>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p> <p>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p> <p>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

지정번호 제 호 Cert. No.: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YPE APPROVAL TESTING LABORATORY			
명칭(상호) Company			
성명(대표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소(사무소) Address			
지정받은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Kind of Type Approval Testing Laboratory			
비고 Remark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laboratory is designated a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2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nd Article 36.2·36.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p>			
<p> 년 월 일 Y M D</p>			
해양수산부장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12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4.10.28.>

독립시험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 리 지정신청 30일 기간 변경신청 7일
신청인	명칭(상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대행업무의 내용]	
	변경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 20조의 2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의 4제 1항·제 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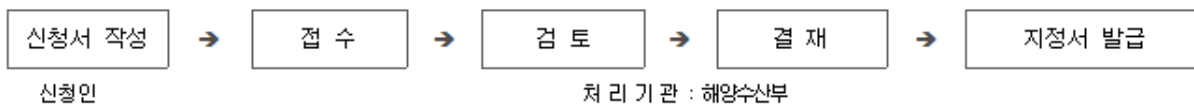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4. 10. 28.>

제 호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대행업무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름용지(1종) 12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자본금			
선박 평형수 저장· 처리 설비 및 시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헴전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제 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 처리업
5. 사업소의 소재지:
6. 선박평형수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날짜	내용	확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변경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에 따라 선박 평형수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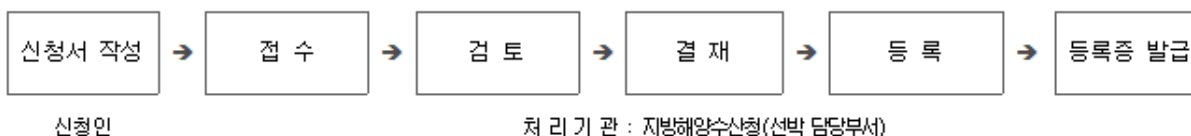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7. 1.>

회 사 명					
우편 번호/ 과명	주소/ 과장/	담당/ 담당자/	전화/ 이메일/	팩스/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의(선박평형수·침전물) 처리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p>					
일자	선박명	폐기물 종류	수거량 (m ³ ·kg)	처리량 (m ³ ·kg)	처리방법
계	/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시행일: 2017.9.8.]

① 발급번호 Issued Number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DISPOSAL CERTIFICATE OF THE BALLAST WATER)	
제 호 No.			
선박 Vessel	② 선박명 Name of ship		
	③ IMO 번호 IMO No.		
	④ 선박번호(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letters)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⑥ 총톤수 Gross tonnage		
⑦ 수거량 Quantity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m ³
	침전물 Sediment		m ³
⑧ 수거일 및 장소 Disposal date and place			
⑨ 수거자/등록번호 Disposal/Registration No.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Ballast Water/Sediments has been disposed under Article 23.2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nd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p>			
<p>년 월 일 Y M D</p>			
<p>업체명 A registered entity</p>		<p>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p>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의무 승계일(합병일)		
권리·의무 승계(합병)의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 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제 1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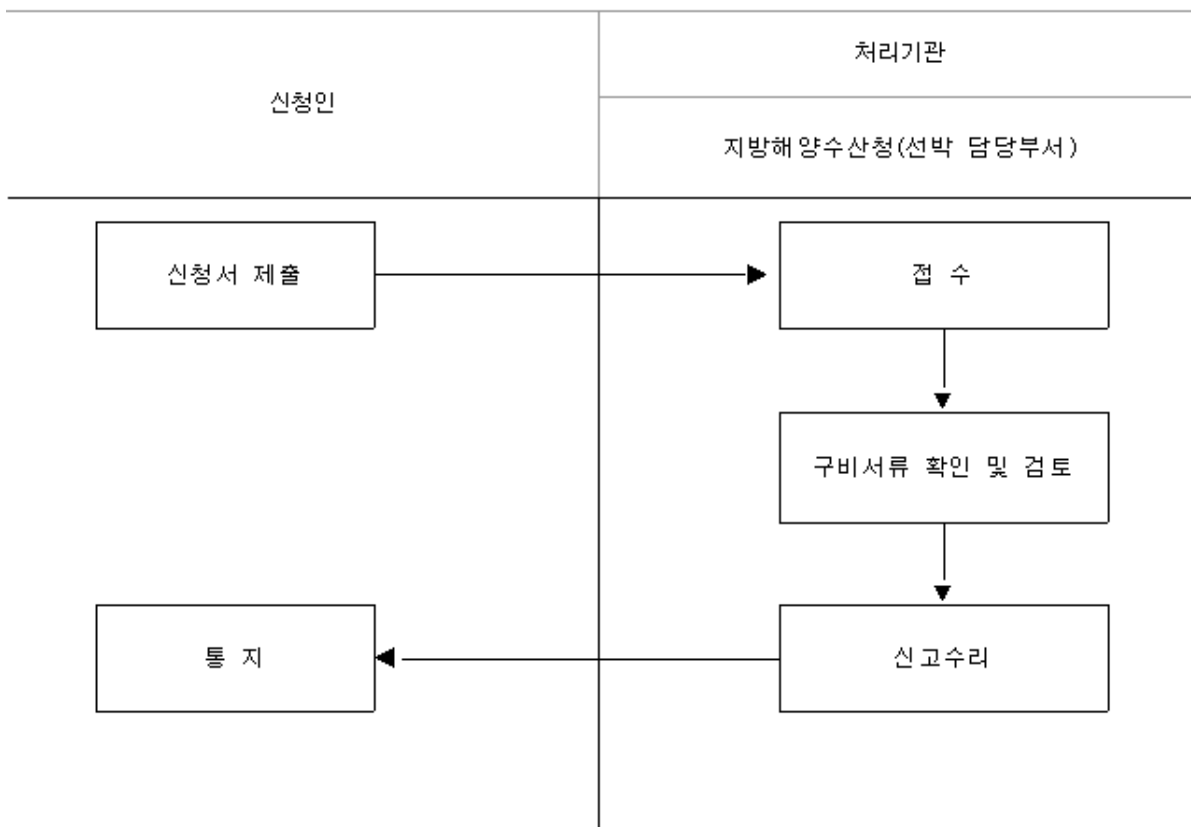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7. 1.>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한글	전화		
		영문	전송		
	대표자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한글			
		영문			
대행 받으려는 업무의 범위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 30조제 1항·제 2항, 영 제 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제 49조에 따라 검사 등의 대행을 위한 협정 체결[]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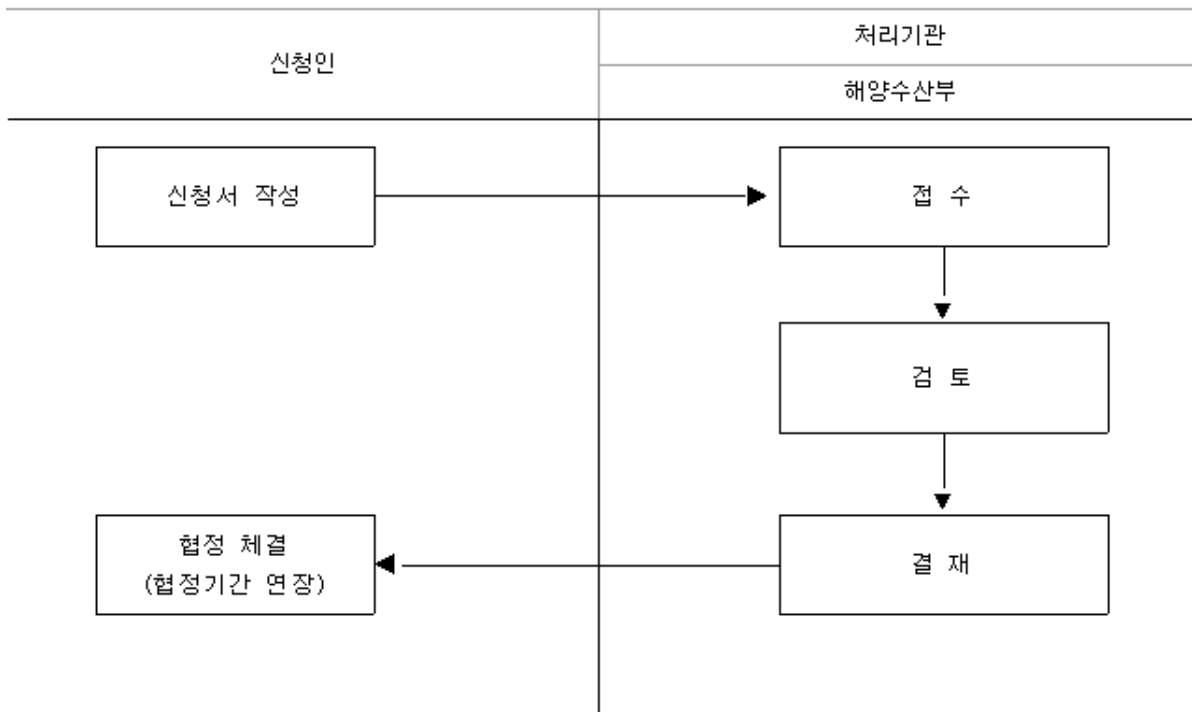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 4조제 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 30조제 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재질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7. 1.>

제 호 No.			
항해정지명령서 Notice of Prevention of Sailing			
① 선박명 Name of Ship		② 선장 성명 Name of Master	
③ 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④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⑤ 총톤수 Gross Tonnage		⑥ 용도 Purpose of Ship	
⑦ 입항일 Date of Arrival	년 월 일 Y M D	⑧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Departure	년 월 일 Y M D
⑨ 항해정지 사유 Reason for Prevention of Sailing			
⑩ 기간 및 해제 조건 Period & Condition of release			
⑪ 비고 Remarks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en the reason for the Preventing Sailing is dismissed, contact the PSCO immediately to release a ship from prevention of sailing.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Notic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Enforcement Decree for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p>			

210mm×297mm[백상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7. 1.>

제 호 No.			
수리 · 보완명령서 Notice of Repair/Supplementation			
① 선박명 Name of Ship		② 선장 성명 Name of Master	
③ 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④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⑤ 총톤수 Gross Tonnage		⑥ 용도 Purpose of Ship	
⑦ 입항일 Date of Arrival	년 월 일 Y M D	⑧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Departure	년 월 일 Y M D
⑨ 수리 · 보완 사유 Reason for Repair /Supplementation			
⑩ 기간 및 해제 조건 Period & Condition of release			
⑪ 비고 Remarks	수리 · 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en the reason for the Repair/Supplement is dismissed, contact the PSCO immediately to release a ship from prevention of sailing.		
<p>「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 · 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Notic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Enforcement Decree for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p>			

210mm×297mm[백상지(80g/㎡)]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4.10.28.>

지정교육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신청인	명칭(상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교육요원 및 교육장비, 지정교육의 내용]		
	변경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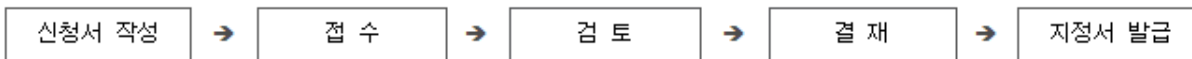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4.10.28.>

제 호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지정교육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름용지(1종) 120g/㎡)